

제 281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8.30.)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정책과] 1
- 2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5
-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9
- 4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담당관] 15
- 5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담당관] 19
- 6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구교육과] 23
- 7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민원소통과] 26
-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30
- 9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기업과] 34
- 10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과] 37
- 11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과] 4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4. 8. 16.

나. 발 의 자: 박수자 의원 대표 발의(11명)

(박수자,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5. 20. ~ 5. 24.(5일간)
 - 나) 예고결과: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 확산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주차장법」 제6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2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도내의 경우 경상남도 등 8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에 적용범위와 제5조에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현재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8개소임.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취지이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우리군 청사 주차장에는 현재 1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 여성우대나 장애인 주차장처럼 대상자가 아닌 이가 주차를 해도 벌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양심에 기댈 수 있도록 예우 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발췌

□ 「주차장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이하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가치 구현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무비율을 명시하고 그 기능을 구체화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 보장함(안 제8조·제9조)
 - 1) 사회적 약자, 청년 등의 위원 비율을 20퍼센트 이상 구성
 - 2) 심의사항 추가
 - 가)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 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
- 나.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확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신설함(안 제11조·제12조의2·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7. 12. ~ 8.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가치 구현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사항 추가,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확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따른 입법운영의 문제는 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가치 구현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 안 제8조와 제9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청년 등에 대한 의무비율을 명시하고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에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확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그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 숙원 사항을 해결하는 수단과 축제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 제8조제3항과 제4항에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검토 사항,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를 명시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개정안 제9조제2항에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20%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권의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의무를 강화함(안 제5조·제8조·제14조의2)

- 1) 이율이 높은 계좌로 기금 관리
- 2)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 3) 심의안건 보충자료에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 작성을 의무화
- 4) 연도별 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화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 1)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3조·제16조

나. 예산조치: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5억원(2024. 6. 30. 기준)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7. 12. ~ 8.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여유 자원 활용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제16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기금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데 따른 입법 운영상의 문제는 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 안 제5조, 제8조, 제14조의2에 기금의 관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6조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음.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0개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1조 4,035억원의 통합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 ▲ 비(非)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지 ▲ 민간전문가 비율(1/3)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 분석 평가’ 감점 ▲ 심の内역·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
- 이에 따라 우리군은 통합기금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의결일 2023. 10. 23.

~생략~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43개 지자체(광역 17 · 기초 226)

※ 23개 지자체는 통합기금 운용 시 권고사항 반영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①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 -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모두 운용하는 경우 계정별로 구분 개설 	243개 지자체	'23.12.
② 통합기금 효율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 	243개 지자체	'24.6.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관리 의무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관리 의무 명시 - 효율적 관리 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㉓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 한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 -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적립기준 완화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㉔ 통합기금 운용심 의위원회 설치·운 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非)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의 대행 금지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 - 민간전문가 비율 1/3 미만에 대한 감점기준 신설 ※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세부 기준에 규정 	행정안전부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 (심의내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 명시 - (예치현황)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행사 및 공모전 등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신설함(안 제16조)
- 나.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신설함(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 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6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7. 19. ~ 8.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필요

- 기부문화 정착 및 지속적 확산을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재정법」 제17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인쇄물 제작 등에 연간 60백만원 소요 예상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경남도(시행 24.7.4.), 진주시(시행 24.4.5.), 김해시(시행 24.5.9.), 함안군(시행 24.4.17.)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 운영중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 제16조와 제17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 조례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제공하는 현물과 금전적 지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발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
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
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축구의 대중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드론 레저·문화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및 시설을 정함(안 제8조)
- 나. 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및 면제를 정함(안 제9조)
- 다. 준용을 정함(안 제10조)
- 라.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제161조
- 2)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드론축구경기장 설치비용 2023년 군비 45,816천원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7. 18. ~ 8.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드론축구경기장 설치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156조, 제161조

-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드론축구경기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 설치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신설하여 드론축구장 설치와 이용료, 관리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제11조에 드론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생략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지원, 상담프로그램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내
- 나. 위탁범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 * 청소년수련관 2층 4개 공간(사무실 1, 교실 2, 창고 1)
- 다.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 직전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라. 재 원 : 235,184천원 / 2024년 기준(보조금 지원)
 - 1) 여성가족부 지원 : 기 97,192(50%), 도 29,158(15%), 군 68,034(35%)
 - *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2) 그 외 군비 지원 : 40,800천원 내외 추가(별도)
- 마.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바. 위탁조건

- 1) 위탁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 교부 가능한 금액으로 함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준수 등

사. 신청자격

- 1)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비영리 청소년단체

아. 선정기준

- 1) 선정방식 : 담당부서에서 구성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구 성 : 6~9인(군 소속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 절 차 : 평가 및 심의 → 최종 1개 단체 선정·의결
 - ※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
- 2) 평가기준
 - 수탁기관의 적격성(30점)
 -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경영상태, 청소년 관련 사업 운영실적
 - 사업운영의 전문성·책임성(50점)
 - 청소년 관련 사업 전문성, 사업계획 타당성, 운영전담 인력 전문성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20점)
 -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 방안,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등 방안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방과후아카데미 현황 포함)

나. 관련법령

- 1)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2)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2023.12. 여가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됨.
- 변화되는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을 잘 빠르게 반영하고,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가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
- 향후,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와 사업수행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임.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및 급식 인원 5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센터현황

- 1) 시설명 :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3) 대상시설 : 43개소(어린이급식시설)
 - ※ 사회복지급식시설 23개소 2026년 추가 예정
- 4) 인력기준 : 4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2)
- 5) 사업비 : 199,600천원(국 99,800 도 29,940 군 69,860)
 - ※ 사회복지 급식시설 추가 시 사업비 300,000천원 증액 예정
- 6) 위탁사무
 -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관리 및 식사 지도
 -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생관리 지침과 위생교육 자료 개발
-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과 정보제공·공유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수탁기관 선정 절차

1)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센터시설의 설치 계획 방안 등

3) 자격요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수탁기관 선정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다. 추진일정

- 1)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공모 및 심사위원회 심의 : 2024. 10. ~ 11.
- 2) 위탁관련협약 체결 : 2024. 1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1) 예 산 : 199,600천원
- 2) 비용추계서 : 책자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43개소와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으로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됨.
- 현재 어린이 급식시설 43개소가 운영 중이나 2026년 사회복지 급식시설 23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특성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식품과 관련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한편,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
- 향후,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와 사업수행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 기준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공개 모집 시 이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임.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변경)

1. 제안이유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부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 교환으로 취득하려던 토지를 매입 취득하고, 추가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 요

- 1) 위 치 :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 2) 사 업 명 :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사업
- 3) 사업기간 : 2024. ~ 2027. (48개월)
- 4) 사 업 비 : 29,738백만원 (증3,125백만원)
- 5) 개발면적 : 80필지, 49,246㎡(증37필지, 10,316㎡)
- 6)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 47필지 조성, 타운하우스 16세대, 다누리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당초 : 16필지, 14,898㎡(4,506평)
- 변경 : 25필지, 19,544㎡(5,912평) / 【붙임1】 참조

다. 처분재산 세부내역

- 당초 : 8필지, 3,660㎡(1,107평)
 - 변경 : 해당없음 / 【붙임2】 참조
- ※ 사업계획 확대변경에 따른 취득방식 변경(교환 ⇒ 매입)

라. 추진경과

- 1) 2023. 06. 02. : 공모 선정
- 2) 2023. 07. 12. : 자문건축가(임지환 동윤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
- 3) 2023. 09. 15. : 지역개발계획(변경) 안 제출
- 4) 2023. 10. 31. : 중앙 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5) 2023. 12. 28. : 지역개발계획(변경) 승인
- 6) 2024. 03. 22.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마. 향후계획

- 1) 2024. 08. : 추가편입토지 감정평가 수행
- 2) 2024. 10. :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 3) 2024. 1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완료
- 4) 2025. 02.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완료
- 5) 2025. 03. : 부지조성 공사 착공
- 6) 2027. 12. : 사업 완료

바. 기대효과

- 1) 은퇴자들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안정된 정착과 지역 사회 활력 및 발전에 기여
- 2)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정주인구 증가에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책자 참조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74회 정례회 시 거창읍 대평리 1422-10 등 16필지(14,898㎡)에 대해 승인하였으나,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거창읍 대평리 1378-64 등 10필지, 9,963㎡를 추가로 매입하고, 당초 교환 예정이었던 대평리 1422-43번지는 취득으로 변경, 대평리 1422-23번지는 미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행안부 등 8개 부처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를 해 거창군 등 7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강원도 영월군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음.
- 다수의 지자체에서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규모확장, 접근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역활력타운 선정결과

2023년		2024년	
지자체	사업명 (총사업비/면적)	지자체	사업명 (총사업비/면적)
거창군 (경남)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266억/38,930m ²)	영월군 (강원)	동강영월 더 웰타운 (300억/25,091m ²)
괴산군 (충북)	성산별곡 성산별빛마을 행복을 노래하다 (242억원/ 34,866m ²)	김제시 (전북)	힐스타운 시암 조성 (411억/41,416m ²)
인제군 (강원)	인제부:터 (502억/265,591m ²)	곡성군 (전남)	곡성 활명수 (427억/29,271m ²)
예산군 (충남)	예산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新활력 Up-타운 조성사업 (160억)	사천시 (경남)	남쪽 가장 아름다운 동네 남일마레 (645억/36,051m ²)
남원시 (전북)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220억/ 33,993m ²)	보은군 (충북)	보은 청년 all來 (379억/22,267m ²)
담양군 (전남)	대덕 매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267억/ 260,000m ²) ※ 500세대 주거단지	부안군 (전북)	부안 해뜰 웰니스가든 타운 (354억/36,728m ²)
청도군 (경북)	청려도원 - 청년의 여유와 공동체 삶을 위한 무릉도원 (396억/ 39,000m ²)	영주시 (경북)	영주 플레이 그라운드 HI·VE (693억/43,088m ²)
		금산군 (충남)	자연치유 아토피아 산꽃마을 리뉴얼 (143억/101,191m ²)
		구례군 (전남)	구례산에마을 조성 (551억/77,709m ²)
		상주시 (경북)	청년과 지역을 잇는 상상주도 마을 (370억/44,700m ²)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2025. 1. 준공 예정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 나. 위치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6번지
- 다. 주요시설 : 복합문화시설, 다목적체육시설 등 1530m²
- 라. 위탁대상 사무범위
 - 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복합문화시설, 다목적체육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향상에 관한 업무
- 마.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경영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 선정
- 바. 선정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거창군에 두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위탁비용 : 180,000천원(3년간)

1) 연차별 비용 : 1년차 60,000천원/ 2년차 60,000원/ 3년차 60,000원

2) 위탁비용 산출방법 : 운영원가 - 추정수입

※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반영

자. 선정기준

1)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 선정

2) 수탁 응모기관 1개 법인·단체인 경우 종합점수 60점 이상 시 수탁자 선정

3) 응모 기관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할 시 재공고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나. 향후계획

1)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24. 10월 중순

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024. 11월 중순

3)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시설점검 : 2024. 12월 ~ 2025. 1월

4) 수탁운영 실시 : 2025. 2. ~

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붙임1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5. 1월 준공 예정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이라고 볼수 있음.
- 최근 각종 공모사업의 결과물로 신규 시설물들이 늘어나면서 단순 시설물 관리부터 경영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까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늘고 있음.
-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
 - 직영의 경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1년차에 45.4%이지만 매년 지출이 늘어나 5년 후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41.6%로 줄어들고,
 - 민간위탁의 경우 1년차에 51.2%로 나타났지만, 5년 후에는 근소하게 늘어나 51.7%가 되므로 직영 대비 민간위탁이 예산 절감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옴.
- 또한, 본 건물은 승강기베스트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 대부분이 산업단지 근로자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요자의 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직영으로 인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해 조성한 신라촌 조성사업 시설물인 설화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현황

- 1) 위 치 : 거창읍 중촌2길 97-44, 설화구전관(지상2층)
- 2) 수탁기관 : 영농조합법인 국경마을 신라촌
 - ※ 대표자 : 신수범(1962년생/거창읍 중촌마을 이장)
- 3) 주요시설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 수		부대시설	비고
3,212㎡	381.58㎡	253.18㎡	지상 2층	층	주민창의마당, 주차장, 벽화거리 등	
				층		

- 4)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5) 위탁대상 사무
 - 설화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활동
 - 설화구전관 시설물 및 비품 관리 위탁, 시설물 이용료 관리
- 6) 예산지원 : 해당없음

나. 운영현황

- 1) 작은도서관(1층) : 상시 개방
 - 거창군 작은도서관 「국경마을작은도서관」으로 지정 등록('23. 1. 12.)
 - 작은도서관 관련 자원봉사자(2명) 근무
- 2) 북 카 페(1층) : 체험 프로그램(시음회) 등 추진
- 3) 다목적홀(2층) : 관내 단체 연습장소 및 행사 대관 인형극 동아리 운영
- 4) 운영실적

구분	내 용	2022	2023	2024. 8월말 기준	비고
1	대관 이용	36회	12회	10회	
2	체험 프로그램	3회	3회	-	
3	기타 프로그램	인형극 동아리 운영	인형극 동아리 운영	어린이 대상 설화구연 인형극 공연 2회	

다. 갱신계획

- 1) 연장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2) 계약방법 : 수의계약(재위탁)
- 3) 예산지원 : 해당없음

라. 향후계획

- 1) 2024. 8. : 민간위탁 사무처리 평가 실시
- 2) 2024. 8.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 3) 2024. 8.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 부결 시 설화구전관 운영 민간위탁 공고
- 4) 2024. 9. : 거창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5) 2024. 12. : 설화 구전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3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읍 가지리 중촌마을 내 위치한 설화구전관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기존 수탁자인 중촌마을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있고, 필요할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 갱신 대상이 되며, 위탁기간 3년은 가능할 것임.
- 다만, 기존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할 경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은 상황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 군 누리집에 공개된 「2023년 거창군 설화구전관 민간위탁사무 업무성과 결과」 만으로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판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2023년 거창군 설화구전관 민간위탁사무 업무성과 결과

평가항목	평가내용	양호/보통/미흡	비고
계			
설화구전관 운영 및 관리	시설·장비 관리상태 및 활용도 시설·장비 상태, 필요성, 이용률 등	양호	현장확인
	문서·대장 생산 및 관리 계획서, 보고서, 회의록, 사진, 대장 등 생산·보존·폐기	보통	서류확인
	운영비 집행 내역 및 적정 수입 및 지출 사항 적절성 여부	양호	서류확인
	체험프로그램 실적 및 내용 참여인원, 시간, 내용, 자료 등	보통	서류확인
설화구전관 체험프로그램 활동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연계사업) 협력 회수, 내용 등	보통	서류확인
	설화구전관 홍보 언론, 인터넷, 책자 등 홍보 실적 홍보 건수, 내용 등	미흡	서류확인
기타	신규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서류, 증빙자료 등 확인	양호	서류확인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8.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8. 16.

2. 제안이유

-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됨에 따라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 나. 위치 :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87(수송대관광지 내)
- 다. 주요시설

구분	초급체험장	중급체험장	고급체험장	자재보관실	상설전시실
558.28㎡	108.90㎡	87.23㎡	81.30㎡	52.20㎡	228.65㎡

- 라. 민간위탁지원금 : 연 55,000천원
- 마. 추진현황

-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계획 수립 : 2024. 8월

4. 참고사항

가. 운영 계획

1)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2025. 1. 1.~2027. 12. 31)
- 수탁자(단체)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현재 민간위탁 운영현황

- 수탁단체 : 목재문화진흥회
- 위탁기간 : 2021.10. 01.~2024. 12. 31.(3년 3개월)

2) 위탁대상 사무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 인력 확보 운영
- 이용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검토 추진
-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장비 비품 관리

3)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목재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험프로그램 제공에 유리함.

나. 관련 법령

-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 4)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

다. 향후 계획

- 1) 수탁자(단체) 모집공고 : 2024. 9월 중
-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024. 10월 중
- 3) 위·수탁계약 체결 : 2024. 12월 중

라. 위탁운영 계획 : 책자 참조

5. 검토의견

- 지난해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목재이용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목재문화지수가 해마다 상승해 2023년의 경우 62.6점으로 국민들의 목재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 경남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4위(71.2점)임
- 본 동의안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부터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왔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임.
-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검토 추진
 - 이용객 불편 사항 접수 처리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 시설과 장비 비품 관리 등임.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목공·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지역 목공 관련 인적 자원의 참여와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코로나19 엔데믹이 된 2023년에는 매출액이 96,572천원으로 전년 매출액 68,880천원 대비 40% 가량 상승하여 향후 전망이 기대되나,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 55백만원과 선도자 목공체험교실 운영비 48백만원 등 103백만원의 예산지원에 비해 매출액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목재문화체험장은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연령별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 방학을 이용한 획기적인 이벤트 등 타 체험장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